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 환경부 공고 제2006-32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들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그간의 법 집행 및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화장품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나. 일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GLP)의 인정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3년 경과후 고시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 통지후 즉시 고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

하는 국내시험기관(GLP)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기관 및 시험항목의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바. 화학물질등록평가과의 신설에 따라 화학물질 심사단을 폐지함(안 제15조).

사. 현행 허가만 받으면 똑같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어 취급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하였으며, 대통령령(소량 100킬로 이하)이 정하는 경우 수입허가를 면제하는 조항을 폐지함(안 제33조, 제34조).

자.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된다거나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유독물 영업등록 취소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취소의 구체적인 조건을 신설함(안 제22조, 안 제27조, 안 제36조).

아.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제7의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동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포

함한다)

제7조제3항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동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심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유해성심사를”을 “유해성심사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당해 유해성심사 항목에 대해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은 유해성심사 항목에 대한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은 유해성심사 항목 전항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여 시험의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각 기준 미달 정도가 크지 않으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후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유해성심사 항목에 대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 균열, 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 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취급제한물질”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 규정 중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수입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여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5호 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취급제한물질”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여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여 동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동조제5항 및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제7호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 중 “제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동항제11호 중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7조 중 “제27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의2,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 종류별, 사업 규모별, 위반횟수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부과하되,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중 “제27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의2,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7호 중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에 제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호 중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7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5호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 중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6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5호 중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를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동조제7호 중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 중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6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

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 중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39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 특별 회계법”으로 하고, 제53조제5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63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1조, 제15조, 제25조, 제55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신규 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즉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 중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